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로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
----------	-----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 양송이·신희식·유승용

·임현호·이순우 의원(5인)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 또한 다양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공통된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활성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3.)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안정”을 “경영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의 제목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을 위한 <u>지원계획</u>을 수립할 수 있다.</p> <p>제4조(경영안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u>경영안정</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 ----- ----- ----- ----- <u>계획</u>-----.</p> <p>제4조(경영안정지원 등) ----- <u>경영안정지원</u> 등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u> 구청장은 <u>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u></p> <p><u>2. 소상공인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u></p> <p><u>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u></p>

<p><u>제4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생략)</u></p>	<p><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4조의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u></p>
--	--